

제5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참 가 요 강



강 원 도 체 육 회

차 례

□ 일 반 사 항	3
□ 시 상	3
□ 참 가 요 령	4
1. 경 기 방 법	4
2. 심 판 및 경 기 규 칙	4
3. 채 점 방 법	5
4. 참 가 자 격	5
5. 참 가 신 청	13
6. 사 전 열 람	14
7. 대 표 자 회 의	15
8. 부 칙	15
9. 참 가 요 강 변 경 사 항	17

□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21

1. 육 상 23	22. 승 마 60
2. 수 영 28	23. 체 조 61
3. 축 구 32	24. 하 키 62
4. 야 구 33	25. 펜 싱 63
5. 테니스 34	26. 배드민턴 64
6. 소프트테니스 35	27. 태권도 65
7. 농 구 36	28. 조 정 66
8. 배 구 37	29. 볼 링 68
9. 탁 구 38	30. 롤 러 69
10. 핸드볼 39	31. 요 트 70
11. 럭 비 40	32. 근대5종 71
12. 자전거 41	33. 카 누 74
13. 복 싱 43	34. 골 프 76
14. 레슬링 45	35. 보디빌딩 77
15. 역 도 47	36. 우 슈 79
16. 씨 림 50	37. 핀수영 81
17. 유 도 51	38. 세팍타크로 83
18. 검 도 53	39. 바 독 84
19. 궁 도 54	40. 당 구 85
20. 양 궁 55	41. 산 악 86
21. 사 격 57	

□ 강원도민체육대회 채점내규 87

제5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요강

□ 일반사항

1. 대회명칭: 제5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겸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도 예선대회
2. 기 간: 2022. 6. 10.(금) ~ 6. 14.(화) / 5일간
3. 개 최 지: 고성군(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횡성군, 양구군, 양양군)
4. 주 최: 강원도체육회
5. 주 관: 고성군, 고성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6. 후 원: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7. 종 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8. 경기종목: 41종목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 자전거,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궁도, 양궁, 사격, 승마,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볼링, 롤러, 근대5종, 요트, 카누, 골프, 보디빌딩, 우슈, 핀수영, 세팍타크로, 바둑, 당구, 산악

□ 시 상

- 종합시상 (1, 2부)
 1위~3위 : 우승기, 회장배, 상장
- 개인 및 단체시상 (1, 2부)
 1위~3위 : 상장
- 모범선수단상 (1, 2부)
 1위 - 회장배, 상장, 상금
- 성취상 (1, 2부)
 1위 - 회장배, 상장

□ 참가요령

1. 경기방법

가. 시·군대항전 (1, 2부)으로 한다.

- 1부 (9개시군)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철원군
- 2부 (9개 군) :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나.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토너먼트 경기로 하되 동위자 순위전(3, 4위전 또는 5, 6, 7, 8위전)은 실시하지 않는다. (동률 3위, 5위)
- 2) 1개 시·군에서 2개 팀이 출전할 수 없다.
- 3)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되는 단체 및 개인경기 종목의 시드배정은 개최지 시·군에만 적용한다.
- 4) 승부는 경기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경기종목의 경기규칙에 의하여 결정한다.
- 5) 1부, 2부 우승팀 (개인경기 포함)은 선발전을 할 수 있다.

2. 심판 및 경기규칙

가. 심판은 해당경기단체 공인심판원이 담당한다.

나. 경기규칙은 현행 회원종목단체 경기규칙에 의한다.

다. 경기운영은 도민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한다.

3. 채점방법

가. 도민체육대회 채점내규에 의한다.

나. 전 경기종목을 채점하되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되는 종목(종별) 중 1, 2부에서 1개 시·군(팀)이 참가 신청한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가 정한 최소 인원 이상이 참가해야만 점수를 배점한다.(단, 도체육회와 중앙회원단체 등록 팀으로 전국단위 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팀은 예외로 한다.)

다. 도민체전에 참가하여 입상 하여도 기준기록에 미달되면 채점에서 제외한다. (해당종목: 육상, 수영, 역도, 양궁, 사격)

4. 참가자격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가신청을 필한 임원·선수에 한함.

단, 고등부는 도내 학교 재학생에 한함. 다만, 학교밖청소년으로서 스포츠클럽 소속 선수는 학령연령에 따라 고등부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강원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별 선수등록을 소정 기일 내에 필한 자

다. 고등부 선수 참가자격

1) 고등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등록지 시·군 소속으로 우선 참가한다.

단, 도민체육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학교 재적기간이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1학년은 3월말 현재 재학 중인 자는 참가할 수 있다.

2) 종별 구분없이 일반부만 실시하는 종목에 참가하는 고등학교 선수는 등록지 시·군 소속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단, 등록지로 참가하지 않는 잔여선수는 시·군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기준지 또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3) 고등부가 있는 종목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는 대학부나 일반부에 참가할 수 없다.

- 4) 순수 단체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세팍타 크로, 수구)을 제외한 종목의 고등학교 선수 중 소속 시·군으로 출전하지 않는 잔여 선수는 소속 학교장과 시·군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기준지 시·군 또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시·군으로 혼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전국체전의 선발전을 겸하는 단체전으로 실시하는 개인경기 종목(소프트테니스)은 예외로 한다.
- 5) 강원체육고등학교의 선수 중 개인경기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는 등록기준지 또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시·군 소속으로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기준지 및 초·중학교 졸업연고지가 타 시·도인 무연고 선수는 도민체전 개최지로 참가하며, 강원체육중학교 졸업선수는 초등학교 졸업연고지로 출전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지 및 중학교연고지 시·군 소속으로 참가하지 않는 잔여선수는 등록지(학교소재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 6) 경기방법을 단체전으로 실시하는 개인경기 종목에 참가하는 강원체육 고등학교 선수는 등록기준지 또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시·군으로 혼성하여 참가한다. 단, 등록기준지 및 중학교 졸업연고지가 타 시·도인 무연고 선수와 등록기준지 또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시·군으로 참가하지 않는 잔여선수도 등록지(학교소재지)시·군 소속으로 혼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 7) 유급 및 재수 사실이 2회 이상이거나, 유급 후 1년이 경과 또는 재수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익 년도에 입학하지 아니한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8) 체육특기자로서 타 시·도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본도로 전학한자 및 진학자는 당해년도 1학기 개학전일까지 전·입학하였을 경우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9)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타 시·도 전학자는 당해년도 1학기 개학이후에 전·입학하였더라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 당해 시·도 관내 해당종목 육성교가 없거나 당해 시·도에 특기자 진학을 신청하였음에도 특기자 정원이 없어 본도로 진학한 경우
- ㉡ 해당 종목팀 해체 시 당해 시·도 관내 동일 종목의 팀이 없어 본도로 진학한 경우
- ㉢ 단체경기종목(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수구, 세팍타크로) 중 해당 시·군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창단된 신설팀에 전·입학한 타시·도 선수로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경우
- ㉣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근무지의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근무처 재직증명서, 인사이동 증빙서가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 ㉤ 체육특기자의 가족 중 개인사업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어 전 소속 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라. 대학부 선수 참가자격

(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대학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등록된 시·군으로 우선 참가한다.
- 2) 대학부가 있는 개인경기종목 참가 우선순위
 - ㉠ 선수등록지 시·군
 - ㉡ 등록기준지 또는 초·중·고 졸업연고지 시·군 단, 강원체고 졸업선수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시·군 참가(동의서 제출)
 - ㉢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연고지 시·군이 다를 경우 해당선수의 동의를 받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연고지 시·군으로 참가(동의서 제출) (해당종목: 육상, 복싱, 레슬링, 씨름, 유도, 태권도 등)
- 3) 대학부와 일반부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단체경기 종목에 참가하는 대학팀 선수는

- ㉠ 소속 대학이 단일팀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대학 소재지 시·군으로 우선 참가할 수 있으며,
 - ㉡ 대학선수와 일반선수를 혼성하여 참가할 경우에는 “라항 4호”의 대학부가 없는 개인 경기종목에 참가하는 대학선수의 참가 자격을 적용한다.
- 4) 대학부가 없는 개인 및 개인단체종목 참가 우선순위
- ㉠ 중·고등학교를 대학 소재지 시·군에서 졸업한 경우 대학 소재지 시·군
 - ㉡ 등록기준지 또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연고지 시·군 단, 강원체고 졸업 선수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시·군(동의서 제출)
 - ㉢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연고지 시·군이 다를 경우 해당 선수의 동의를 받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연고지 시·군 참가(동의서 제출)
 - ㉣ 선수등록지 시·군
- 5) 대학부가 있는 경기종목의 대학선수는 일반부에 참가할 수 없다.
- 6) 경기방법을 단체전으로 실시하는 개인경기종목의 대학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해당종목: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검도, 양궁, 사격, 체조, 펜싱, 배드민턴, 볼링, 근대5종, 골프, 바둑 이상 12개 종목)
- ㉠ 단일소속(학교)으로만 구성이 되었을 경우 선수등록지로 우선 참가한다.
 - ㉡ 대학부가 있는 경기종목은 한국체대와 용인대학을 제외한 타 시·도 대학선수는 참가할 수 없으며, 도내 소재 대학선수로 선발팀을 구성할 경우 우선순위는 “라항 2호 - ㉠ ㉡ ㉢적용”을 한다.
 - ㉢ 대학부가 없는 경기종목은 해당 시·군으로 참가 자격이 있는 타 시·도 대학선수와 혼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 ㉣ 1개 시·군에서 2개 팀 이상 육성하는 시·군은 선수를 선발하여 혼성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 7) 사격, 볼링, 체조, 조정, 카누 종목의 단체전 경기에 단일팀(4인 이상)으로 참가한 선수는 개인전에 별도의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단체전 단일팀

참가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는 타 시·군의 소속으로 개인전에 참가할 수 없다.

- 8) 대학원,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대학 선수가 아닌 일반부 선수의 참가 자격을 적용한다.
- 9) 군입대 준비 및 개인사정으로 휴학 중인 자는 일반부 선수의 참가자격을 적용한다.
- 10) 타 시·도 실업팀 등록선수가 학업을 위해 도내대학에 진학한 자는 참가할 수 없다.
- 11) 단체경기 종목에 타 시·도에 등록된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해당종목: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세팍타크로, 수구)

마. 군인선수는 일반부에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 1) 단체경기 종목의 군인선수는 부대장이 확인한 주둔지 시·군의 단일팀 또는 선발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병사, 부사관, 장교는 군경력과 관계없이 주둔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 해당종목: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세팍타크로
- 2) 개인경기 종목(개인전만 실시하는 종목)에는 아래와 같이 참가한다.
 - ㉠ 등록기준지 시·군, 현거주지, 주둔지(병사, 부사관, 장교) 또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연고지 시·군 (동의서 제출) 단, 강원체육고등학교 졸업 선수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소속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 3) 개인경기 단체종목(예: 테니스, 탁구, 검도 등)에는 등록기준지 시·군 또는 주둔지 시·군 소속으로 참가할 수 있다.
 - ㉠ 등록기준지 시·군으로 참가할 경우
 - 등록기준지 시·군 일반선수와 혼성하여 선발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 등록기준지 시·군 단일팀에 군인선수를 포함하여 단일팀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 등록기준지 시·군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도 있다.

㉞ 주둔지 시·군으로 참가할 경우

- 주둔지 시·군 일반선수와 혼성하여 선발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 주둔지 시·군 단일팀에 군인선수를 포함하여 단일팀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 주둔지 시·군 소속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도 있다.

4) 군무원(행정)은 군인(전투)이 아니므로 일반부 선수의 참가 자격을 적용한다.

5) 공익근무요원은 일반부, 상근예비역은 군인선수(병사)의 참가자격을 적용한다.

바. 일반부 선수 참가자격

(종목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단체경기 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 단체경기 종목의 일반부는 등록된 시·군 소속으로 단일팀 또는 선발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단일팀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해당팀에서 3개월 이상(도민체전 참가신청일 기준) 재직한 자에 한하며, (단,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에 재직하는 자는 재직기간 3개월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발팀일 경우에는 개인종목 일반부 참가자격“바항 2호 - ㉠ ㉞ ㉟적용”을 한다.

㉞ 타 시·도 소속 실업팀으로 종목별 중앙경기단체에 선수 등록된 단체경기 종목의 선수 및 본도 중앙연고 실업팀 선수는 동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해당종목: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세팍타크로, 수구

㉟ 도내실업팀(단체종목)은 2022년도 선수등록을 소정기일 내에 시·군 소속팀 명의로 등록을 필하면 시·군 소속 단일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2) 개인경기 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초·중·고 졸업연고지로 참가한다.

단, 초·중·고 졸업연고지로 참가하는 자는 2개교 이상이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예: 초·중, 중·고)

- ㉠ 현거주지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대회 참가일까지 거주하는 곳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1개월(30일) 이내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전·출입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도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편제되어 있는 자 중 도내기업체, 체육회, 교육청, 학교에 3개월 이상(도민체전 참가신청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자는 소속 시·군으로 우선 참가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민등록 편제일은 “바항 2호 - ㉠적용”을 적용한다.
- ㉢ 개인 및 개인경기 단체종목의 전국 각 실업팀에 소속된 선수로서 본도에 등록기준지 또는 거주지를 둔 자는 해당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 ㉣ 도내실업팀(개인종목)은 소정기일 내에 시·군 소속팀 명의로 선수 등록을 필하면 해당소속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등록기준지로 참가할 경우 참가자격 “바항 2호 - ㉠적용”, 현거주지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2022년 2월 28일 이전부터 대회 참가일까지 거주하는 곳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강원도청 및 강원도체육회 소속 실업팀 선수는 당해년도 도민체전 개최지 시·군으로 참가한다. 단, 개최지로 출전하지 않는 잔여 선수는 등록기준지로 참가할 수 있다.
- ㉤ 경기방법을 단체전으로 실시하는 개인종목에 한하여 단일소속(직장 단일팀)인원만으로 구성이 되었을 경우 등록지로 참가할 수 있다. 단, 해당기관 및 기업체에 3개월이상(도민체전 참가신청일 기준) 재직한 자에 한함. (해당종목: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탁구, 검도, 궁도, 양궁, 사격, 체조, 펜싱, 배드민턴, 볼링, 근대5종, 골프, 바둑)
- ㉥ 사격, 볼링, 체조, 조정, 카누 종목의 단체경기(4인이상)에 단일팀으로 참가한 선수는 개인전에 별도의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단체전 단일팀 참가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는 타 시·군 소속으로 개인전에 참가할 수 없다.

◎ 개인경기 종목의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2004년 9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다만, 2004년 9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참가할 수 있으며(졸업 증명서 첨부) 일반부만 있는 경기종목은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사. 2개 지역 이상 참가 자격이 있는 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한 시·군에 참가 자격을 인정한다.

아. 동일인이 1개 경기부문 이외의 타 경기부문에 참가할 수 없다. 경기 부문이라 함은 육상, 수영, 축구 등의 경기 분야를 말한다.

(예: 레슬링 경기부문에 참가하는 선수가 씨름, 유도 등의 타 경기 종목에 참가할 수 없다.)

자. 대회장(경기장) 참석시에는 반드시 일반부(군인선수 포함)는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학생부(고·대학생)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경기진행 임원의 제시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하지 않으면 실격으로 처리한다.

차. 참가신청마감 이후 선수의 자격(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대회참가는 참가신청마감 당시의 소속으로 한다. 단, 고등부 선수는 참가자격 “다항 1호”를 적용한다.

카. 경기단체 임원중 심판으로 배정된 자 및 대회임원, 강원도체육회 배정 지도자는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

타. 강원도체육회 및 종목별 회원종목단체에 기존 육성팀으로 등록한 선수가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해당 선수등록 종목에만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단, 동계종목 및 도민체전 미개최 종목(시범종목 포함)과 개최 종목 중 미개최 종별 하계종목은 예외로 한다.

파. 등록기준지로 참가 시 등록기준지의 기준일은 2017. 1. 1.로 한다.

5. 참가신청

가. 신청마감 : 2022. 4. 7.(목), 17:00까지

나. 신청장소 : 영월군체육회 사업운영팀

다. 참가신청 :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함

라. 제출방법 : 시·군체육회 책임자가 직접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마. 구비서류

- 1) 참가신청서 원본 2부.(소정양식) * **파일은 공문포함 제출**
- 2) 재학증명서 1부 (고등부 및 대학부) * **강원체고는 미제출(공문으로 대체)**
(단, 선수의 생년월일 및 재적 연·월·일이 명시되어야 함)
- 3) 등록기준지 참가자는 기본증명서 1부.
(본인의 기재사항이 생략되지 않은 것에 한함. 단, 순수 단체종목에 출전하는 남자선수는 병적증명서 첨부)
- 4) 현 거주지 참가자는 주민등록초본 1부.
(단, 거주일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남자선수는 병역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5) 초·중·고등학교 졸업 연고지로 참가하는 대학 및 군인, 일반선수는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와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 6) 군인선수 또는 단체(개인단체포함)는 부대장 발행의 복무확인서 1부.
(주둔지 주소 기입 필수)
- 7) 개인경기 종목의 단체전에 참가하는 단일팀은 소속 기관장의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각 1부.
- 8) 공무원 또는 기업체 직원이 근무처 소재 시·군으로 참가할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및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각 1부.
- 9) 고등학생으로서 등록기준지 또는 중학교 졸업연고지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는 기본증명서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와 학교장 승인서, 소재 시·군체육회장 동의서 각 1부. (참가자격“다항 4호”참조)

10) 일반부 단체전에 참가하는 단일팀은 소속기관장의 연명 재직증명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각 1부.

(재직증명서는 입사 년월일이 기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됨)

11) 일반부에 참가하는 자(1992년~2003년생)중 주민등록초본에 병적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 1부.

12) 사격의 전 세부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는 총기소지허가서를 지참한 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산탄총에 참가하는 선수는 당해년도 도민체전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대한사격연맹 등록선수에 한한다.

13) 각종 구비서류는 대회개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도민체전 종료일에 반환한다.

사. 참가신청 마감 이후의 추가신청은 일체 불가함.

6. 사전열람

가. 일 시 : 2022. 4. 14.(목) ~ 4. 20.(수), 7일간

나. 장 소 : 스포츠진흥과 체육진흥팀

다. 조 치 : 참가신청 마감 후 시·군 책임자가 해당 종목의 참가신청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강원도 체육회에서는 이를 조사 처리하되,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는 이의신청서 또는 소청서는 일체 처리하지 아니한다. 단, 경기진행시 회원종목단체에서 무자격 선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 신청할 경우에는 조사 처리함.

라. 열람확인서 제출 : 2022. 4. 20.(수), 18:00까지 공문포함 제출.

7. 대표자 회의 및 대진추첨

가. 일 시 : 2022. 4. 29.(금), 11:00

나. 장 소 : 강원도체육회 대회의실(B1)

다. 회의내용

- 1) 대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토너먼트 종목 대진추첨
- 3) 기타사항

8. 부 칙

가. 전국체육대회에 도단위 선발팀을 구성 참가하여야 할 경기 종목의 선수 선발은 강원도체육회에서 결정한다.

나. 필요에 따라 종목별 재 선발대회 또는 평가전을 개최하여 대표선수를 재조정한다.

다. 본도 중앙연고, 도연고, 도내 기업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은 전국체육대회에 도대표팀으로 우선 참가한다. 단, 강원도체육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발대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대표팀을 결정할 수 있다.

- 도연고 실업팀: 화천KSPO(축구)
-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삼척시청 핸드볼

부상선수 교체

- 참가신청 마감 후 훈련 중 부상선수는 대회개막 7일전

(2022. 6. 3. 18시) 까지 유자격 선수로 교체할 수 있음.

단, 부상선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병원장 또는 보건소장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 해야함.

제3조(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①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0.8.13, 1994.12.23, 1998.12.31,
2005.12.30>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4. 삭제<1998.12.31>



참가요강 변경사항



□ 참가자격 변경사항

1) 변경내역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1	- 테니스 참가자격 대학부, 일반부는 KTA 등록된 선수 참가 불가	- 테니스 참가자격 동 규정 삭제	전문체육대회 위상 정립
2	- 실업팀 가산채점 시군청 소속 실업팀 전년도 전국 체전 획득점수의 300% 당해 도민 체전 종합점수에 가산	- 실업팀 가산채점 동 규정 삭제	규정 제정취지 反함
3	- 유도종목 체급별 경기운영시 부별 5인이하 참가경기 리그전 운영	- 유도종목 종목별 시군 대표자회의 결정에 따름	
4	- 유도종목 19세 이하 미학적 청소년선수 참가자격 없음	- 유도종목 19세 이하 미학적 청소년선수중 클럽소속 선수 고등부 참가	학교밖청소년 으로 처우
5	- 종목운영 1,2부별 4개이하 시군이 참가한 종목은 당해년도 미개최종목 지정 및 3년 연속 미개최시 종목제외	- 종목운영 동 규정 삭제	비인기종목 활성화

2) 변경근거 : 강원도민체육대회 규정 제6조(사업 및 권한)에 의거

2021. 강원도 종합체육대회 운영개선평가회(1. 18.) 및

2022. 제1차 도민체전위원회(2. 9.) 심의·결정되었으며,

동 규정에 의거 개정된 내용은 2022년도 대회부터 시행함.